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김영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이유

-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의 정의 등 (안 제2조)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 등 (안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9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10조)

4. 검토의견

-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2015. 5.18)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

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이 평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조항을 두었음. 상위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상징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인사, 근무환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개발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표준 조례안에서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지원범위에서 적용 배제 하였으나 본 제정안에서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표준조례안 보다 더 지원범위를 강화한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됨.

○ 금번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편리한 근무환경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끝.

참고자료

충청북도청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일 반 직					별 정 직	연구 지도 직	계 약 직	관 리 운 영	특 정 직 (교원)	중 중
		소 계	5 급 이 상	6 급	7 급	8-9 급						
계	51	45	8	11	19	7		3		2	1	8
지체	32	28	7	7	12	2		2		1	1	7
뇌병변	2	2		1		1						
시각	6	5	1	2	2			1				
청각	2	1			1					1		
신장	1	1			1							
심장	1	1			1							
공상 군인등	7	7		1	2	4						